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34조(이익분배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②(생략)	제34조(이익분배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</u>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1. <u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u> 2. <u>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</u> ② (현행과 같음)
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</u>